



2018년 전문도서관경영 교육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

한국문화정보원
변호사 김지성



문화체육관광부

KCIS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학습목표

- ▶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도서관에서 복제, 전송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 ▶ 업무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목차

- I. 저작물 등 개념
- II.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III. 기타 저작재산권 제한
- IV. 분쟁 및 상담사례

저작물

I. 저작물 등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법 제2조 제1호)

특징

인간의 생각의 산물

단,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을 필요는 없음

독자적인 창작성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신규성과는 다름

외부로 표현

매체에 고정되지 않아도 보호됨 (즉흥연주 등)



1. 단순 통계수치자료에도 저작물성이 있나요?
2. 유명 노래 제목을 행사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3. 법령 자료도 이용 시 허락이 필요한가요?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I. 저작물 등 개념

▶ 저작권법 제7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편집물,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물의 예시

I. 저작물 등 개념

┆ 저작권법 제4조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자

I. 저작물 등 개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법 제2조 제2호)

특징

- ▶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자**
용역 발주처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만 법인이 저작자

1. 기관 보조금으로 촬영한 사진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2.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3. 업무상 작성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 업무상저작물

I. 저작물 등 개념

-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 등'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저작인격권

I. 저작물 등 개념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 (법 제11-13조)

종류

▶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의 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1. 저작권을 양도받아도 원작자 이름을 써야 할까요?
2. 원고 작성을 의뢰한 후 우리 기관에서 변경해도 될까요?
3. 오탈자, 비문 수정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저작권재산권

I. 저작물 등 개념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법 제16-22조)

종류

▶ **복제권**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 등)

▶ **공연권**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미술 저작물 등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배포권** (원작 또는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배포)

▶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

▶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I. 저작물 등 개념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구분		기산	보호기간
공공기관 등의 단독저작물		공표시	70년
공공기관 등의 공동저작물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와의 공동저작물	공표시	
	개인과의 공동저작물	저작자 사후	
위탁 또는 양도에 의한 공공저작물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공표시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영상저작물 (제42조)		공표시	

→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 제23-38조)

II.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교과용 도서, 학교교육목적 / 시험문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 기사, 논설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서관의 자료 복제 등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 변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 도서관의 복제

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1. 연구 목적으로 소장 자료의 PDF 파일을 요청합니다.
2. 도서관에 설치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도서관의 복제

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 판매되는 자료도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는 가능한가요?
2. 다른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 자료를 빌려 복제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한가요?



→ 전자도서관 서비스

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지털 복제 제한 등

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④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복제방지조치 (열람만 가능)
2. 접근제한조치 (도서관 이용자만 이용 가능)
3. 도서관 직원 교육
4.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 설치 등

→ 도서관 보상금 제도

II.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⑤ 도서관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문이용안내

  : 모든 이용자

  : 협정기관 이용자

  :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

 : 표시가 있는 원문 이용시 저작권료가 부과됩니다.

원문아이콘이 없는 자료는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자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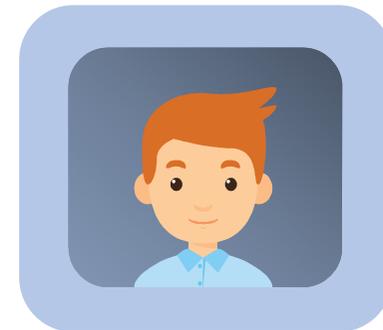
Ⅲ.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 SNS에 자료를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 아닌가요?
2. 도서관 복사기도 사적 복제는 가능한가요?
3. 개인 스캐너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Ⅲ.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도서의 목차, 표지 이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2. 도서관 직원이 초록을 작성하여 서비스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Ⅲ.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권용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용자에게 도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 구글 북스(Google Books)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작가협회는 연방대법원이 공정 이용이라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이 결정으로 인하여 야기될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함.

저작권동향 2016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Ⅲ. 기타 저작권제한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1. 공표된 저작물(음악, 미술 모두 포함)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예시)
3. 정당한 범위(주종관계 - 시장 수요의 대체성)
4. 공정한 관행(인용목적, 개작인용 · 요약인용 문제, 출처명시)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 썸네일 이미지 사건 (대법원 2005도7793)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Ⅲ.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정책

Ⅲ. 기타 저작권재산권 제한



로그인 | 회원가입 | 내서재 | 바꾸기 | 사이트맵 | ENGLISH



자료검색

신청·예약

소통·참여

방문·이용안내

도서관소개

주요서비스

기타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중앙도서관 윤리강령

도서관법령

이용봉사현장

저작권정책

사이트맵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저작권정책

기타메뉴 > 저작권정책

인쇄 | 스크랩 | 소셜미디어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국립중앙도서관 윤리강령 | 도서관법령 | 이용봉사현장 | 사전정보공개 | 저작권정책 | 원격웹프데스크 | 장애인전용 온라인상담

유관사이트



우편번호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문의전화 02-535-4142 팩스 02-590-0530
Copyright©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찾아오시는 길



→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Ⅲ. 기타 저작권 제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2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3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폰트 관련 분쟁사례

IV. 분쟁 및 상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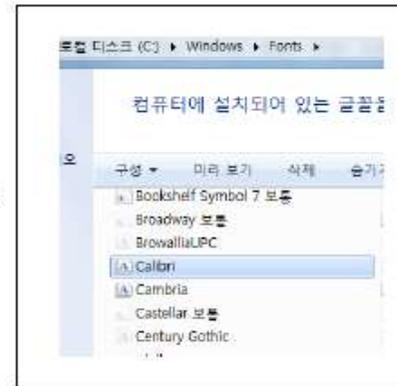
서체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폰트 도안

저작물성 부정
(보호대상 아님)



VS



폰트 파일

저작물성 긍정
(보호대상임)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처방안

- ◆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제작자에게
-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분쟁 발생시 **조정제도** 이용
- ◆ **지급명령**의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 이미지 관련 분쟁사례

IV. 분쟁 및 상담사례

▶ 이미지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대처방안

- ◆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단, 합의금 산정 근거 확인)
- ◆ “**무료 이용**” 문구 주의! (약관 확인), “**이미지 공유**” 주의!
- ◆ 외주제작의 경우 **과실** 없다면 책임 없음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 ◆ 침해 사실 알았다면 이용 중단, **외주제작 입증자료** 확보
- ◆ **확인 및 보증** 등 계약서 작성 중요

초상권 관련 분쟁 사례

IV. 분쟁 및 상담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지역축제 포스터 사건



사실관계 A는 2011년 해당 지자체가 개최한 지역축제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촬영하는지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었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지자체와 축제 조직위는 A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 제공자인 오씨에게 초상권 동의 유무를 문의하는 등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만원을 A에게 배상하라.

공공기관 공모전 출품 사진 사건



사실관계 A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A의 동의 없이 B공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B공사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소외 공사가 사진 내려받아 8년동안 공항에 전시

판결 갤러리 관리자인 A공사의 보호조치 없이 손쉽게 소외 공사에게 2차 배포, 소외 공사는 초상권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오랫동안 자유롭게 활용 가능. 보호의무 소홀에 관한 A공사 과실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하라.

초상권 관련 분쟁사례

IV. 분쟁 및 상담사례

유명 정치인 등 공적 인물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문제 없을까요?



“수인한도”

“독립적, 영리적 이용”

(98라35결정)

(2013나2022827)



얼굴인식 결과

53세 남자
♂ 88%
♀ 12%

남 · 은 · 언 · 예 · 인

80% 정우성
남 38세
혹시 이분의 형제자매
아니신지!

1위

찍는, 순간 미진대! 푸딩 얼굴인식

→ 관련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 저작권 상담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컨설팅/교육 요청,
각종 지원사업 문의 1670-0052
- 기타 02-3153-2872~4

